

사규번호	사규 제목	페이지
M-인사부-A-50	윤리규정	1/7

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2
제 2 조 (적용범위)	2
제 3 조 (기본윤리)	2
제 4 조 (사명의 완수)	2
제 5 조 (자기계발)	3
제 6 조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3
제 7 조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행위 금지)	3
제 8 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3
제 9 조 (안전 및 위험 예방관리 철저)	3
제 1 0 조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이용 및 소셜미디어 사용 주의)	3
제 1 1 조 (임직원의 상호존중)	4
제 1 2 조 (회사 정보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4
제 1 3 조 (임직원의 존중)	4
제 1 4 조 (인재의 육성)	4
제 1 5 조 (공정한 대우)	4
제 1 6 조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4
제 1 7 조 (주주의 이익 보호)	5
제 1 8 조 (경영정보의 공개)	5
제 1 9 조 (고객존중)	5
제 2 0 조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5
제 2 1 조 (고객과의 약속 이행)	5
제 2 2 조 (고객의 이익 보호)	5
제 2 3 조 (평등한 기회 부여)	6
제 2 4 조 (공정한 거래)	6
제 2 5 조 (상호발전의 추구)	6
제 2 6 조 (적극적인 업무 응대)	6
제 2 7 조 (법규의 준수)	6
제 2 8 조 (사회발전에 기여)	6
제 2 9 조 (정치관여의 금지)	7
제 3 0 조 (사회공헌활동 전개)	7
제 3 1 조 (환경의 보호)	7

사규번호	사규 제목	페이지
M-인사부-A-50	윤리규정	2/7

윤리규정

(M-인사부-A-50)

(대표이사)

제정: 2022.03.15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 오상헬스케어와 오상헬스케어의 모든 임직원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안으로는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하며 바른 경영을 실천하고, 밖으로는 사회에 공헌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에 우리는 오상헬스케어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 2 조(적용범위)

- 오상헬스케어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오상헬스케어와 거래관계를 갖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포괄하여 이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기본윤리

제 3 조(기본윤리)

- 오상헬스케어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개인의 품위와 오상헬스케어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는 외부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4 조(사명의 완수)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 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사회법규나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사규번호	사규 제목	페이지
M-인사부-A-50	윤리규정	3/7

3.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관리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4.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제 5 조(자기개발)

1.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 6 조(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는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의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3.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4.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겸업 및 회사에 해가 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제 7 조(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행위 금지)

1.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이나 팀원들의 공평한 비용부담으로 교환되는 부담 없는 선물 등은 예외로 한다.
2.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소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 사용, 보증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금지한다.

제 8 조(직장내 성희롱 방지)

1.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근로의욕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 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제 9 조 (안전 및 위험 예방관리 철저)

1.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제 10 조(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이용 및 소셜미디어 사용 주의)

1. 회사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도박, 음란물, 타인의 개인정보, 출처 불명의 정보 등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2. SNS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의견을 말할 때에는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고 회사 또는 임직원 전체의 견해로 오인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규번호	사규 제목	페이지
M-인사부-A-50	윤리규정	4/7

제 1 1 조(임직원의 상호존중)

1. 임직원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2.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업무수행 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 1 2 조(회사 정보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1. 임직원은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절대 안된다.
2. 임직원은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지식 재산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회사를 통해 특허를 출원해야만 한다.
3. 타인의 지적재산을 존중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 비밀이나 기밀 취득, 무단 사용, 복제, 배포 등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한다.
5.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해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제 3 장 인간존중과 인재육성

제 1 3 조 (임직원의 존중)

1. 오상헬스케어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인간존엄으로 대하며,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 4 조(인재의 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 1 5 조(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2.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 1 6 조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1.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에서 임직원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모든

사규번호	사규 제목	페이지
M-인사부-A-50	윤리규정	5/7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2.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제 4 장 주주의 권익 증진

제 1 7 조(주주의 이익 보호)

1.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2.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3.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 1 8 조(경영정보의 공개)

1.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제 5 장 고객 행복의 추구

제 1 9 조(고객존중)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행복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2 0 조(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2.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제 2 1 조(고객과의 약속 이행)

1. 고객과의 신뢰를 최고의 기업가치로 추구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 2 2 조(고객의 이익 보호)

1.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하도록 한다.
2. 고객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 6 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사규번호	사규 제목	페이지
M-인사부-A-50	윤리규정	6/7

제 2 3 조(평등한 기회 부여)

1. 오상헬스케어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거래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협력회사의 등록 및 거래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 2 4 조(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4.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선물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5. 협력회사가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2 5 조(상호발전의 추구)

1.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을 공유한다.
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제 2 6 조(적극적인 업무 응대)

1. 직접면담 또는 전화통화시 친절한 언행과 태도로 임한다. 만일, 협력회사와의 업무진행 중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라도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한다.
2.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한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제 2 7 조(법규의 준수)

1.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법규위반으로 인해 개인적 또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한다.

제 2 8 조(사회발전에 기여)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회사업을 통해 칭찬받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 한다.

사규번호	사규 제목	페이지
M-인사부-A-50	윤리규정	7/7

제 29 조(정치관여의 금지)

- 오상헬스케어 및 임직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회사는 헌법에 보장된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이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사회공헌활동 전개)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회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한다.

제 31 조(환경의 보호)

- 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 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위반 신고)

- 오상헬스케어의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의 신고채널에 즉시 신고한다.
-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내부 신고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 회사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해서 불이익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조(위반시 징계 및 관리자의 책임)

- 본 규정을 위반하는 임직원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임원과 조직장은 특정 상황이나 행동이 규정, 사내 정책,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위반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해당 이슈를 해결하거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